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저작권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관련 사항 법률 명시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11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4. 8. 23.

다. 회 부 일: 2024. 8.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시행령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등을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 인증제도는 인증기관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증서 발급 권한을 가진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인·허가 성격을 가진 지정으로 볼 수 있고, 지정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인 점을 감안할 때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6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저작권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취소 등’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 (생략) <u><신설></u> <u><신설></u>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 <u>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u> <u>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u>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u> <u>4.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u>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한 경우 ④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인증업무의 범위·수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

2. 검토의견

저작권의 ‘인증’이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33호1)). 저작권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자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엄격한 기준에 따른 인증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에 현행법 제56조²⁾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물 등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저작권법

1)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시행령」 제36조³⁾에서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일종의 침익적 행정행위인 ‘지정취소’ 등 관련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저작권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저작권 인증기관 지정과 관련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 3)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2. 이용자의 등록정보 관리 및 인증서를 생성·발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3.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갖출 것
- ③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업무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의 종류
 2. 인증기준
 3.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4. 인증역무의 이용 조건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인증업무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처리한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첫째, 현행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로는 개정안에서 명시한 네 가지 외에도 ‘인증업무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처리한 경우’(제2호)와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가 규정되어 있는데, 인증기관이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증기관의 공신력 및 인증제도의 안정성·신뢰성 저하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사유 또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로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⁴⁾

둘째, 안 제56조제3항은 네 가지 지정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제1호)만을 필요적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제3호)는 이미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업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인증업무를 행한 것이므로, 이 경우 또한 필요적 지정취소 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봄.⁵⁾

셋째, 안 제56조제2항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전문인력, 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저작권 인증의 전문성·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이 구체적인

4) 문화체육관광부도 같은 의견임.

5) 문화체육관광부도 같은 의견이며, 그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시행령 제36조제6항제3호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필요적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인증업무 규정’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정요건의 예시로서 이를 함께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지정요건의 세부내용은 시행령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일부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봄.⁶⁾

문 의 처
02)6788-5376

6)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상 인증은 ‘권리인증’과 ‘이용허락인증’으로 그 범위가 명확하고 ‘인증절차’에 ‘수행방법’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 규정인 안 제56조제4항을 현행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